

<p>改正과 서울市의 駐車場設置條例가 改正됨에 따라서 現行 條例를 改正된 法 規定에 一致되도록 整備하면서 이 事業運營에 있어 現況과 맞지 않는 土地의 賣却規模와 Methods 등을 明示하여 住居environment改善事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, 이 改正案의 關係法令과 一致하고, 條例運營上 現況과 맞지 않았던 事項을 충분히 反映하여 补完되었다고 인정되어 市長이 提出한 改正案대로 改正하기로 하였습니다.</p> <p>두 번째, 서울特別市再開發事業條例中 改正條例案은 93年度 서울市와 그 所屬機關의 職制가 改正됨에 따라서 이 條例에서 정한 再開發業務와 關聯된 價格評價委員會 業務가 당초 住宅局에서 都市計劃局으로 移管됨으로 業務分掌이 變更됨에 따라서 이 委員會를 管理하는 所屬公務員도 당초 住宅局長에서 都市計劃局長으로 바꾸도록 條例를 改正한 것입니다.</p>	<p>改正條例案의 구체적인 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內容을 參考하여 주시고,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에서 審議하고 修正한 內容대로 3件의 條例가 改正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님들의 적극적인 協助를 바랍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감사합니다.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서울特別市再開發事業條例中 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, 그리고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 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	<p>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이상 3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
<p>(議事権 3打)</p>	<p>.....</p> <p>(參 照)</p>
<p>세제로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은 政府施策에 따라서 서울市가 建立하게 되는 公共아파트와 買入者아파트를 建設할 수 있는 財源을 서울市가 出資하도록 되어 있어, 公社의 法定資本金 限度額을 上向하도록 하면서 92年度 地方公企業法이 改正됨에 따라 公社 運營要領을 地方公企業法에 맞도록 條例를 改正하고자 한 것이나, 條例改正案中 公社에 대한 業務監督과 業務의 報告 및 檢查를 要求할 수 있는 機關을 市長 外에 內務部長官을 追加하려고 한 것은 地方化時代의 趨旨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指摘되어서, 또 地方公企業法으로도 公社運營을 직접 規制할 수 있는 事項이라고 판단되어 公社의 業務監督과 報告 및 檢查 要求權者를 規定한 條例改正案 第28條와 第29條 中 內務部長官을 刪除하도록 우리 委員會에서 修正案을 提案하였으며, 나머지 改正案은 市長이 提案한 內容대로 改正하기로 하였습니다.</p>	<p>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항중 “주택국장”을 “도시계획국장”으로 한다.</p>
<p>이 條例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조의2(경영의 기본원칙)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중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조의2(경영의 기본원칙)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중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“1조원”을 “1조5천억원”으로 한다.</p>